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자료</h1>			 대한민국 대전환 <b>한국판뉴딜</b>  내 삶을 바꾸는 <b>규제혁신</b>
	<b>보도</b>	<b>2021.9.1.(수) 조간</b>	배포	
<b>책임자</b>	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이 동 엽(02-2100-2960)	<b>담당자</b>	권 진 응 사무관 (02-2100-2945)	
	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양 해 환(02-3145-7460)		최 성 호 팀장 (02-3145-7474)	

## 제 목 : 「보험업법 시행규칙」 개정

- 재물손해사정사·보험계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.

- ① 재물손해사정사·보험계리사 제1차시험시 인정되는 **공인영어시험 인정범위 확대**를 통해 **수험생 부담 경감**
- ② 공인영어시험별로 듣기점수를 제외한 **청각장애인의 별도 점수기준을 마련**하여 **청각장애인 불이익 해소**

### 1. 추진 배경

- 그동안 보험계리사·재물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에 포함되는 공인 영어시험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.
  - ① 공인영어시험으로 인정되는 시험 종류가 한정되어 수험생의 불편 발생(「국민권익위원회」 권고사항)
  - ② 청각장애인의 경우 듣기점수가 포함되는 공인영어시험성적의 합격점수 충족에 어려움 발생(「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」 권고사항)
- 이에 따라, 업계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해왔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「보험업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합니다.

## 2. 개정 내용

### ① 공인영어시험의 인정범위 확대

- (현행) 보험계리사·재물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시 인정되는 공인영어시험 종류를 토익, 토플, 텡스로 한정하였습니다.
- (개정) 공인영어시험 인정범위에 지텔프(G-TELP), 플렉스(FLEX)를 추가하였습니다.

### ② 공인영어시험 종류별로 청각장애인에 대한 별도기준 마련

- (현행) 공인영어시험성적에 듣기평가가 포함되어 있으나 일반 응시자와 청각장애인에 동일한 합격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.
- (개정) 청각장애인\*에 대해 듣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 별도의 합격점수기준\*\*을 마련하였습니다.

\*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(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할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(「장애인복지법」 시행규칙 별표1 제4호 가목1) )

\*\* 감정평가사, 공인노무사 시험 등 타 시험과 동일하게 듣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점수에 「일반 응시자 합격점수의 만점 대비 비율」을 적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산출

#### <공인영어시험별 합격기준>

구 분	합격에 필요한 점수	
	일반응시자	청각장애인
토익(TOEIC)	700점 이상	350점 이상*
토플(TOEFL)	PBT: 530점 이상	352점 이상
	IBT: 71점 이상	35점 이상
텡스(TEPS)	340점 이상	204점 이상
지텔프(G-TELP)	65점 이상(level 2)	43점 이상(level 2)
플렉스(FLEX)	625점 이상	375점 이상

\* (예시) 토익 일반 응시자 합격점수 : 700점 이상(만점 990점)

토익 청각장애자 합격점수 : 350점 이상 [=듣기 영역 제외점수 495점×(700/990)]

## 3. 향후 일정

- 개정된 규정은 '22년부터 시행되는 재물손해사정사 및 보험계리사 제1차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  
할 경우 출처를 표기  
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 
[prfsc@korea.kr](mailto:prfsc@korea.kr)

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**